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 〉

■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23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	3
※ 참고자료	7
1. 국내외 기후예산제 도입 사례	7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절차	8

I. 제안경위

2024년 9월 30일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함. 이에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국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그 명칭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배출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감축효과만 살펴보도록 해 그 취지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의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취지에 알맞게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함으로써 각 예산사업의 온실가스 배출효과 등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폭넓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III. 검토의견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

개정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여 각 예산사업의 온실가스 배출효과 등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예산과 기금 등 재정운용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u>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u> 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u>기후인지 예산제도</u>) ----- ----- ----- ----- ----- ----- <u>기후인지</u> ----- -----.

현행법¹⁾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국가재정법」²⁾상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도입과정³⁾에서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감축사업을 그 대상으로 작성하고 있어 국가 예산 사업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함으로써 각 예산사업의 온실가스 배출효과 등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폭넓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⁴⁾한 것으로 보임.

2) 「국가재정법」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제57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소위(2021년 4월 22일)에서는 대상사업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계량화하기 용이한 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하였음.

4)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게 될 경우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는 축소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정사업 중 온실가스를 일정부분 이상 배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서에 포함시키는 등 부정요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참고로, 서울시는 기후영향을 감축, 혼합, 배출, 중립의 4종류로 분류하고, 배출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기후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다만,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는 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2023회계연도에 처음 도입되어 감축량산정방법 고도화, 평가환류를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 제도 안착과정 선행이 필요한 상황이며, ② ‘기후인지예산제도’의 도입 시 8,400여개 이상 국가 전체 세부사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도한 행정 부담이 우려되고, ③ OECD 국가 중 전체사업 대상으로 작성 중인 국가는 프랑스가 유일하며, 프랑스도 단순히 사업을 분류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의 구체적인 작성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국가재정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 개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5) 프랑스는 감축효과에 대한 산정없이 단순히 예산을 긍정, 부정, 혼합, 중립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임.

○프랑스 녹색예산(green budget)

- 환경분야 6개 기준(완화, 적응, 수자원, 자원순환, 오염저감, 생물다양성)에 따라 4개(긍정, 부정, 혼합, 중립) 분류('17년~), '23년 기준 긍정(378억 유로, 6.5%) 등

문 의 처
02)6788-5533

[참고자료 1] 국내·외 기후예산제 도입 사례6)

□ 국내 사례

- **서울시 기후예산서**(‘20~’21년 연구·시범사업, ‘22년부터 시행)
 - 기후영향 분류(감축, 혼합, 배출, 중립)하고 사업유형, 감축효과, 성과 목표 등을 포함한 기후예산서를 작성
 - * ‘23년 기준 대상사업은 209개, 3.1조원(6%), 감축효과 약 19.6만톤 추정
- **경기도 탄소영향평가**(‘20~’21년 시범사업, ‘22년부터 시행)
 - 온실가스 배출영향 체크리스트 마련·시범적용 → 예산 분류(감축, 혼합, 배출, 중립), 탄소인지예산서 작성 체계로 발전(‘22년~)
 - * ‘22년 자본지출 사업 374건 검토 결과 감축사업 52개, 27만톤 추정

□ 국외 사례

- **프랑스 녹색예산(green budget)**
 - 환경분야 6개 기준(기후위기대응, 기후변화적응, 수자원관리, 순환경제, 오염 저감, 생물다양성 보전)에 따라 4개(공정, 부정, 혼합, 중립) 분류
- **아일랜드 녹색예산(green budget)**
 - ‘24년 공공서비스 총지출 966억 유로 중 54억 유로 이상을 아일랜드 기후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지출로 분석
- **EU의 기후예산제**
 - ‘21~’27 다년도 재정계획 상 전체 예산의 30%는 기후 관련 정책에 사용하도록 목표 설정(해당 기간 5,783억 유로 기후예산 지출, 32.6% 목표)
- **노르웨이 오슬로시의 기후예산(Climate Budget)**
 - 매년 탄소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방안, 예산, 책임 부서를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6) 자료: 환경부

[참고자료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절차

※자료: 환경부

예 산 서	1월31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 (각 중앙관서의 장 → 기획재정부 장관)		국가재정 법 제28조 제66조
	3월31일까지	예산안 편성 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부처)	제29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지침 통보 (기획재정부(환경부 협조) → 각 부처)	제29조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서 작성·제출 (각 부처 → 기획재정부)	제31조 ⇒ · 대상사업 선정·작성(각 부처) · 교육·컨설팅 등 지원(환경공단)	제27조 제68조의 3
	6~8월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	제32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검토 (기획재정부·환경부·한국환경공단)	-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기획재정부 → 국회) - 첨부서류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포함		제33조 제34조 제68조 제71조
결 산 서	2월말까지	부처별 결산보고서 제출 (각 부처 → 기획재정부)	제58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 작성·제출 (각 부처 → 기획재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 검토 (기획재정부·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제57조의2 제73조의3
	4월10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 → 감사원)		제59조
	5월20일까지	결산검사 (감사원 → 기획재정부)		제60조
	5월31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기획재정부 → 국회)		제61조